

태평요양원 입소계약서

서비스 제공자 태평요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비스 이용자 _____(이하 “을”이라 한다), 보호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요양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이용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 오전, 오후 ____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비용】

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정한 “을”의 등급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금, 그리고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를 합한 값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을”의 의무

- 1) 월 이용료 지급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5) 기타 시설의 운영규정 이행 의무

3. “병”(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을”이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 4 조 【이용료 등 수납】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월 이용료는 매월 5 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계좌번호 : 수협 / 1010-2204-3387 예금주 : 황신우(태평요양원)

제 5 조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 또는 “병”에게 대표자의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을”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을”이 시설 내에서 운영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을"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요양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
9. 기타 요양원 타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치는 경우 대표자의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 퇴 소 】

1. "갑"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해당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 7 조 【 입소물품 】

"을"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갑"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 시설관리 】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으로 하여금 거실을 출입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갑"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병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 9 조 【 요양생활 】

1. "갑"은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병"은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거나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을"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을"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그 실비는 "을"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5. "갑"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종 연고, 해열제, 소화제 등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에 한하여 이를 입소자에게 투약케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과 보호자가 지급한다.
6.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의 신체를 결박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이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0조 【 시설물 관리 】

1.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을"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 위급 상황시 조치 】

1. "갑"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영안실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영안실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갑은 입소자의 납입금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엄수하고 추후에 보호자에게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의사와 전문가의 사실 증명 서류를 포함해야 함)
-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입소자가 시설 직원의 심각한 실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독립적인 이동,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3조 【입소계약서 해석】

1.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시설에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86번길 5
시 설 명 : 태평요양원
대 표 : 황 신 우 (인)
연 락 처 : 031-721-8948

(을) 입 소 자 :

주민번호 :

(병) 보 호 자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주 소 :